제21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6.7.19.)

# 조례안 검토 보고서

##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최종설]

# 목 차


| | | |
|---|---|---|
| 1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1 |

의안번호 제2016 - 45호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2016. 7. 14.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16. 7. 15.

## 2. 개정이유

○ 민선6기 후반기 신임 군수의 군정비전 실현을 뒷받침하고 공약사항 실천과 군정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 조직의 안정을 기하면서 여건변화 등으로 인한 현행조직 운용의 미비점을 보완·보강하여 능동적, 효율적으로 군정을 수행하기 위함.

## 3. 주요골자

가. 실과소명을 변경함(안 제3조, 제4장 제1절·제2절·제4절)

○ 민원봉사과 ⇒ 민원봉사실, 주민생활지원실 ⇒ 복지정책과, 창조산업과 ⇒ 기업지원과, 승강기경제과 ⇒ 경제교통과, 산림녹지과 ⇒ 산림과, 녹색환경과 ⇒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 수도사업소, 문화센터 ⇒ 평생교육센터, 체육청소년사업소 ⇒ 체육시설사업소

나. 실과소 소관업무 변경함(안 제3조, 제7조, 제4장제1절·제2절·제4절)

- ○ 인구증가시책 추진: 기획감사실 ⇒ 행정과
- ○ 기업관련 업무 조정: 승강기경제과 ⇒ 기업지원과
- ○ 교 통 및 운 수 : 안전총괄과 ⇒ 경제교통과
- ○ 문화예술행사 기획·유치: 문 화 센 터 ⇒ 문화관광과
- ○ 박물관, 문화원사, 무형문화재: 문화센터 ⇒ 문화관광과
- ○ 평생교육진흥 및 기획: 창조산업과 ⇒ 평생교육센터
- ○ 도서관 업무: 문 화 관 광 과 ⇒ 평생교육센터
- ○ 청소년 업무: 체육청소년사업소 ⇒ 평생교육센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생략(「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신임 군수의 군정비전 실현을 뒷받침하고 공약사항 실천과 군정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조직의 안정을 기하면서 행정여건 변화로 인한 현행조직 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구 분 | | 실·국 | 실·과·담당관 |
|---|---|---|---|
| 시 | 계룡시 | | 12개 이내 |
| | 인구 10만 미만 | | 17개 이내 |
| | 인구 10만 미만(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 2개 이내 | |
| |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 2개 이내 | |
| |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 3개 이내 | |
| |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 4개 이내 | |
| |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 5개 이내 | |
| |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 | 6개 이내 | |
| |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 4개 이내 | |
| |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 5개 이내 | |
| |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 6개 이내 | |
| |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 7개 이내 | |
| |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 8개 이내 | |
| 군 | 울릉군 | | 10개 이내 |
| | 인구 3만 미만 | | 11개 이내 |
| |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 | | 12개 이내 |
| |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 | 14개 이내 |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7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1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① 법 제26조와 법 제107조 또는 법 제108조에 따른 재의(再議)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문의처 : 행정자치부(02-2100-3805)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 20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 경우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은 의원정수의 3배를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55조 (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